

청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가단517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이광형

피 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정승규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해 청주지방법원 2018. 5. 29. 접수 제54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8지분에 관해 청주지방법원 2018. 5. 29. 접수 제54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A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8. 4.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망 I(2012. 4. 4. 사망), 피고,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 E, F은 망 I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원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5. 29.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543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12. 30. J조합에 원고 A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탁금 2계좌(각 3천만 원,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를 해지한 후 이자를 포함한 합계 61,191,6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은 원고 A가 소유하고, 나머지 1/2은 피고가 원고 A를 끝까지 자택에서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피고가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등기를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피고는 마치 원고 A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 1/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A의 치매증상을 이용하거나 원고 A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한 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원고들 전부를 만나거나 연락하여 동일인 여부 및 이전등기의사를 확인한 다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2020. 12.경 원고 A는 약한 건망증 정도만 있었고, 유효한 의사능력에 따라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1)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원고 A 소유로 하고, 나머지 1/2지분을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아들인 K은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이나 제출경위, 피고와의 관계 등에 있어 상당히 믿을 만하다.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 게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신다는 의미는 가사일을 도맡아하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14살에 부모님 이혼으로 청주 외갓집에서 함께 살게 된 후부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가 제 밥부

터 빨래, 청소까지 다 챙겨주셨고, 엄마보다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더 길니다. (중간 생략)

그래서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이 제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족들이 엄마 고생한다고 집 명의도 1/2 주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몇 천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엄마는 몰래 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었고, 몰래 할머니를 요양보호소에 모셔다 났습니다. 엄마의 욕심으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다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엄마랑 말할 때마다 엄마 형편에 좋게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내고 소리치는 모습도 몇 차례 봤습니다. 할머니가 삼촌, 이모도 있는데 그런 엄마한테 집이며 돈이며 전부 줬다는 건 못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려놔요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 진술서에는 “가족들이 엄마인 피고가 고생한다고 집 명의의 1/2을 주었음에도 엄마가 몰래 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등기를 냈다” 는 내용이 나오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대해서는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대해서는 원고 A 소유로 하되, 나머지 1/2지분에 대해서는 ‘원고 A를 끝까지 자택에서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피고가 상속받는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약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친인 원고 A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다는 기대 내지는 언급이 상속재산 분할협약의 도중에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달리 위와 같은 조건이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결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당시 원고 F이 원고 D, E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외에 나머지 원고들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동일인여부 내지 이전등기의사 등을 확인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망인의 상속재산은 종중땅으로 보이는 충북 진천군 L 임야 등의 토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가 그 주장처럼 오랫동안 부모를 모셨고 망인의 생전 병수발을 들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모친인 원고 A가 생존해 있고 외아들인 원고 C도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을 넷째 딸인 피고에게 전부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이뤄질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1/2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예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K이 제출한 위 진술서에 “엄마의 욕심”, “삼촌, 이모도 있는데 할머니가 엄마에게 집이며 돈이며 전부 줬다는 건 못 믿겠다”, “엄마가 힘들게 할머니를 돌봤다는 사실이 할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건 아니다”는 내용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이 곧바로 ‘피고가 원고 A의 허락없이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한 후 가져갔다’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예금이 해지된 2020. 12.경 원고 A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부족했다거나 피고가 원고 A를 기망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의 허락 없이 또는 원고 A의 치매증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해 청주지방법원 2018. 5. 29. 접수 제54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1) 피고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 소제기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다투었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